

2019년도 제2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21.(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17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200건(안전번호 제2019-133739호~13497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19-133739호는 수사대상인 저작권침해 사이트에서 인라인 링크를 통해 무단 복제한 웹툰을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정권고를 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19-133741호는 음악저작물 등을 무단 이용한 영상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어 삭제를 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계정 255건(안전번호 제2019-7117호~7371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4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3개 안건은 부결함(2개 안건은 부결사유가 중복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1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7쪽 신춘문에 당선작품명 등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하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C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33739호~134974호로 총 5,20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373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국내 사이트인 '○○○○(○○○○○○○○.○○○○)' 운영자가 인라인 링크(inlining link)를 통해 무단 복제한 웹툰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54화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54화는 '△△△(△△△△△△.△△△)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수의 이미지 파일을 인라인 링크(inlining link)를 통해 '○○○○(○○○○○○○○.○○○○)에서 제공하고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2019. 8. 27. 개최한 전체위원회(제2019-167회)에서 논의안건으로 시정권고 심의 중 중대한 저작권 침해 사안을 발견한 경우 보호원에 수사의뢰를 권고하기로 한 바 있음
당시 문제가 된 사이트가 금번 심의 안건의 '○○○○(○○○○○○○○.○○○○)이었음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호원은 내규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규칙」 제21조 제1호, 제3호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특별사법경찰관)에게 '○○○○(○○○○○○○○.○○○○) 운영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한 바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33739호 수사대상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제2019-167회)에서 문제가 된 사이트의 시정

권고의 가결 여부와 보호원에서 바로 수사의뢰를 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위원회는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가결하였음
또한 위원회가 보호원에 대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보호원장 명의로 요청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음

- B 위원 :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에게 수사의뢰 요청한 후의 진행상황은 알지 못함

- B 위원 : 충분한 답이 되었음
본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불법사이트로 판단하여 수사의뢰한 사이트이며, 연락처 등이 전혀 없어 행정조치도 불가능한 경우로 보임
부결하는 것이 수사의 진행이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타당해 보임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인라인 링크를 통해 무단 복제한 웹툰을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됨
하지만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으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C 위원 : 수사의뢰 필요성이 존재하고, 시정권고를 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3739호 수사대상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33740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한글무설치] Spaceland”라는 제목으로 게임물을 판매한 사안임 (합법 사이트 판매 화면을 제시하면서) ‘Spaceland(2019)’는 2019. 10. 1 출시되어 15,500원에 판매 중인 게임 프로그램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33740호 웹하드 사이트의 게임 불법복제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임이 소프트웨어 게임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임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함
참고로 보호원은 내부에서 6대 저작물{영상(방송·영화), 음악, 만화, 출판물, 게임,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건의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지만 보호원 분류 방식에 따라 ‘게임’으로 분류되었음
- A 위원 : 충분한 답이 되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37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33741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 대중가요(한 곡 전체 분량)를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접속하면서)해당 영상은 음원과 함께 해당 곡이 수록된 가수의 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제물 외에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 사진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33741호 음악저작물 등을 무단 이용한 영상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본 건의 경우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부분만 시정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위원회에서는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심의할 수 있지만, 시정권고를 집행하는 보호원은 문제가 된 부분만 특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 통지를 하는 시스

템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하나의 게시물에서 저작권침해가 문제된 부분만 선택하여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서비스는 법 제103조에 따른 권리자 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 삭제하고 있다고 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불법복제물 부분은 시정 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됨
하지만 블로그 운영자가 작성한 글, 본인의 사진의 부분까지 삭제를 하게 되면 이의제기 및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향후 보호원의 집행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의결과 문제의 부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건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하여 요청된 건이 아닌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심의를 요청한 팀에게 내용을 전달하겠음
- B 위원 : 한편 심의대상의 불법복제물 스트리밍 부분을 클릭하여 속성에 들어가면 스트리밍 부분의 주소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스트리밍 부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서)속성에서 보이는 주소는 심의대상 게시물 주소와 동일한 것임
- 정현순 팀장 : 과거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

고의 시정조치만 하여 스스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음

근본적으로는 보호원에서 불법복제물 부분만 특정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인데, 현재 시정권고 집행 측면에서 몇 천개의 게시물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공문이 자동 생성이 되는데, 각 게시물을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만드는 부담이 있을 것임

본 건은 민원인이 신고하여 요청된 건이 아니라 보호원의 자체조사 건인 만큼 복제·전송자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조치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팀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불법복제물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A 위원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본 건에 대하여 원안에서 변경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안함

- B 위원 : 동의함

- C 위원 :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번호 제 2019-133741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33742호~133761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과 불법복제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으로 구성되어 있음(총 21개 게시물)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여 왔음

한편 지난 전체심의위원회(2019. 4. 26. 개최, 제50회)에서는 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심의위원회는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안전표를 보면 저작물 요청자(게시글 게시자), 저작물 전송자(댓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33742호~133761호 네이버 밴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글과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댓글이 하나의 게시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청 글만 놓고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

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댓글 작성자가 올린 파일은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요청글, 댓글)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불법복제물등의 전송과 무관한 온라인상의 표현이 위축될 우려는 없어 보임

- C 위원 : 특별한 의견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3742호~13376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고,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하기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33762호~134974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음악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33823호는 웹하드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호원에서 지정한 저작물명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로 되어 있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다수의 최신 음원파일이 있음
(컴퓨터프로그램 ‘Adobe Photoshop CC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34314호는 웹하드에서 제공한 것으로, 2019년 최

신버전의 라이선스 화면을 확인할 수 있음

(영화 '라이온킹'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5154호는 웹하드에서 제공한 것으로, 2019. 7. 17. 개봉한 Walt Disney의 실사판 '라이온 킹' 임

- C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25029호~12665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33739호는 부결, 안건번호 제2019-133741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 안건번호 제2019-133742

호~133761호는 가결, 안전번호 제2019-133762호~134974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4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117호~7371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6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3개 안전,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4개 안전(부결사유 중복 2건)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2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25.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